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0가단5185769(본소), 2021가단522494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유류분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44950(본소), 2022나44967(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0가단518576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김지훈, 양석준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기탁, 김영주

변론종결 2022. 6. 14.

판결선고 2022. 7.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0. 3. 2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000분의 1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2018. 8. 6. 사망)과 사이에 원고(1남), 피고들(2녀)을 두었고, 2020. 3.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의 2020. 2. 20. 오후 3시경 다음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별지 2 녹취록(갑 제7호증) 기재와 같다.

다. (1) 망인은 2005. 10. 4. F, G으로부터 남양주시 H 전 638㎡, I 대 337㎡ 중 28/674 지분, J 도로 52㎡ 중 20/136 지분(이하 ‘남양주 토지’라 한다)을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3. 다시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과 피고들의 남편은 2019. 8. 2. F, G으로부터 남양주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620,000,000원)를 작성하고, 2019.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8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6, 23, 30, 3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9. 8.경 망인으로부터 남양주토지를 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사인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인증여계약의 성립

보건대, 기초사실 나.항 기재 녹취록의 내용에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특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남양주토지를 분배받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 2020.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 내지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사인증여계약의 해제

(가) 피고들은, 2020.2.경 망인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2.경 망인의 인지능력, 판단능력에 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L기관장에 대한 2021. 6. 30.자, 2021. 12. 1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민법 제555조에 의한 해제를 주장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에 이를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제558조),

사인증여에도 이와 같은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사후에 상속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바, 위 사인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22. 5. 1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2022. 5. 18. 송달되어 위 사인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소결론

결국, 위 사인증여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비적반소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아니함(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판사 신동호

별지1 부동산목록

1. 가.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1층 515.04㎡

2층 511.40㎡

3층 내지 10층 511.74㎡

지하실 442.98㎡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5.29㎡

2. 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 26397㎡

나.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6397분의 51

“끝”

별지2 녹취록

【對 話 內 容】

【대화】

녹음날짜 : 2020년 2월 20일 오후 3시경

녹음장소 : 용인 병실대 화 자 : , (母), 외숙모, (같은 병실 환자의 룸메이트)

아, 니가 오늘 다 이거 니 오늘 온김에,

네.

서류 작성을 다 같이 네 외숙모랑 너랑 같이 가서 다 해라, 니 앞으로

서류작성이요?

응.

그 뭐, 집?

응, 그렇지. 그런 거 다.

집을, 집을 저한테 준다고요?

응, 너 앞으로 다 넘겨야지, 이제.

집을 저 앞으로 넘긴다고?

응.

이렇게만 녹음하면 되는 건가?

아니지, 또 뭐 있겠지. 아, 이리 오지, 또 어디가 내뺄고 앉았나?

외숙모 나?

응.

☐ 외숙모 내가 형님, 여기에 끼면은 큰일나.

☐ 아니, 이제 그렇게 서류작성 내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로 넘겨주잖아.

☐ 네.

☐ 넘겨줬으니까 이제 너그는 어떻게 받아갖고 니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
도. 그걸 알아 처리해야지. 그렇지?

☐ 집은 저 준단 얘기 아니예요?

☐ 응, 넘겨준다.

☐ 예. 그거 서류작성도 이제 준비하라고요?

☐ 응.

☐ 변호사 데려오고?

☐ 데려와야 되냐?

☐ 데려와야 돼.

☐ 변호사 데려와야지.

☐ 그래, 데려와서 해라.

☐ 외숙모 형님이 못 움직이니까.

☐ 그래, 데려와서 해.

☐ 그래.

☐ 그래, 그런 식으로 해 버려야지.

☐ 알겠습니다.

☐ 응. **[이상]**

